

# 대구지방법원

## 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12143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3. 6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손현정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	최선순위 설정	2023. 3. 30. 가압류		배당요구종기	2024. 12. 6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조사된 임차내역없음										
<비고>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.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(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). 지분매각(공유자의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이 있음). 과수목 및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.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## 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121432

[물건 1]

-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50-1  
전 1947m<sup>2</sup>

매각지분 전 소유권 지분 중 5분의 1 (단, 김종환 지분 전부)

감정평가액

168,457,2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	2026.02.02	40,447,000	4,044,700
2회	2026.03.04	28,313,000	2,831,300
3회	2026.04.01	19,819,000	1,981,900
4회	2026.05.07	13,873,000	1,387,300

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(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 반환). 지분매각(공유자의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이 있음). 과수목 및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.